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장소(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12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 도시철도( )
2.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1. 옥상층 : 103동, 104동, 108동, 112동
중계장치 설치장소	1. 지하2층 : P1동 헬름 (2개소) 2. 지하3층 : P2동 헬름 (2개소) 3. 지하5층 : P2동 헬름 (2개소) 4. 옥상층 : ..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공고문(입주자 모집공고문)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주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제 35조~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3년 03월 06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이광애
대리인	(주)영탑종합건축사사무	엄봉현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